

서울고등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20312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정춘식, 김민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김준범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7.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가합51142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20억 원 중 일부인 5억 원, 위약벌 약정에 의한 200억 원 중 일부인 5억 원의 합계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대여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원고의 항소에 대해서는 항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9. 11.경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자 간에 서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4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경 AF와 피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각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합 의 서

AF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합의서에 날인한 이후부터 당사자 본인, 이해관계인(당사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자, 당사자가 대주주 또는 실질적인 투자자로서 지배하는 회사, 당사자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등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 및 그 당사자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각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간에 체결된 계약, 약정 기타 거래관계와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며, 본 합의서의 날인 이전에 상호간에 제기되어 계속되고 있는 민·형사상의 분쟁을 상호 우호관계에 기초하여 상호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 시점에서 해결하기로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는 AF와 피고이므로 이 사건 소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는 AF가 원고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AF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인 2019. 3. 4.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제1항 후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와 별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와 별도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당사자 간에 서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원고 측이 위 구두 합의 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합의를 작성한 후 피고의 날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해당 부분(3쪽 4행부터 15쪽 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

○ 3쪽 7행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로, 그 이하 ”D“를 모두 ”L“로 고친다.

○ 3쪽 11행의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제1심 공동피고 C’이라 한다)“으로, 그 이하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14쪽 3행의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고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15쪽 하5행부터 19쪽 7행까지 및 22쪽 1행부터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16쪽 8행의 ‘제3조’를 ‘제2조’로 고친다.

○ 18쪽 하4행의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를 ”아니한 점, 이 사건 2018. 8. 16.자 약정서에 ‘차용인의 책임으로’라고 기재함으로써 AF가 주식을 기한 내에 반환하지 못할 경우 AF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20억 원과 상계처리 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로 고친다.

○ 19쪽 7행과 8행 사이에 ”피고는 AF가 적어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AF의 2018. 8. 16.자 약정서 작성 행위가 원고를 위한 대리행위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19쪽 8행부터 15행까지[(3)항 부분]를 삭제한다.

○ 22쪽 5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만, 판사 김선아, 판사 구태회